

2020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계획

1. 학업중단숙려제 개요

가.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17.6.22. 시행)
제28조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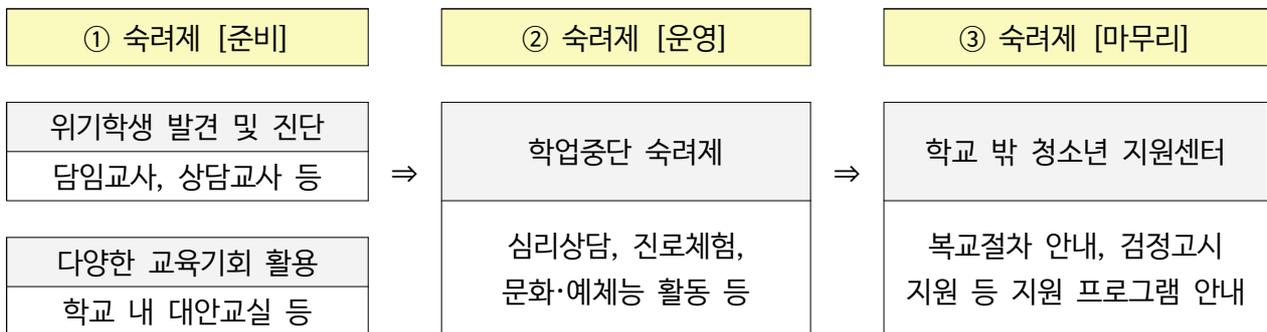
나. 학업중단 숙려제 개요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적정기간 동안 숙려의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 운영주체 : 학교장
- 숙려기간 : 공휴일 포함 기본 1주(7일) 이상 ~ 최대 7주(49일) 이하
본교 기본 2주 후 연장필요 시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를 거쳐 결정함.
- 연간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기간은 49일을 초과할 수 없음(전입생:사전 확인)
- 교사 기간을 피하여 숙려기간 부여(숙려제-교사-숙려제로 이어질 경우 1회)
- 고3학생은 수시합격 또는 수능시험일 이후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할 수 없음.
- 학교, 교육지원청(Wee센터), 교육청 지정 숙려제 운영기관의 숙려 프로그램 및 상담을 통한 학생 위기원인별 맞춤형 지원

다. 운영방식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단계별 흐름도〉



2.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가. 숙려제 준비 단계

(1) 위기학생 발견 및 진단

- 위기학생의 학업중단 위기징후 포착 시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이 학생의 학교생활을 관찰하고 상담 실시

(2) 숙려제 참여 대상

-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및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구두·자퇴원 제출)를 밝힌 학생

숙려제 참여 대상

- ①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 ② 담임교사, 상담교사, 진로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 ③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④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숙려제 참여 제외 대상

- ①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학생
- ② 질병, 병원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 ③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무단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 ④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3)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 위기학생의 욕구, 위기원인 등을 파악하여 Wee클래스, Wee센터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우선 활용
- 멘토링, 심리상담, 자연·문화체험, 예체능 활동, 진로상담, 기초학습지원 등

(4) 숙려제 안내

-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이후 학부모 면담을 통해 숙려제를 안내하고 숙려제 운영기관, 프로그램 진행 방식, 참여 기간 결정
- 상담 실시 기관은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자율적 선택
- Wee센터, Wee클래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등

(5) 상담 내용

- 학교에서 심리 및 진로상담(전학, 대안학교, 위탁교육 등) 필수
- 학업복귀 권고, 학업중단 이후 상황 안내 및 진로 정보 제공
-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부모상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안내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 외부의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운영 : 여행, 인성 및 진로캠프, 전문 심리 상담, 예체능 체험, 직업체험, 대안교육 등

나. 숙려제 운영 단계

(1) 숙려기간

- 최초·최종 상담일 등 숙려기간의 개시·종료일의 기준은 학교장이 정함
- 2주를 기본으로 하되 상담 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 시점까지 숙려기간 연장 가능
- 학생이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고,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날의 다음 날(공휴일과 무관)부터 숙려기간 부여

(2) 외부 연계 강화

- 상담 기간 중 외부 상담기관과의 연계를 위해 학생(또는 보호자)의 상담 신청서(개인 정보 제공 동의 포함) 작성
 - ※ 미동의시 Wee센터 또는 상담센터 이용 절차 안내로 갈음
- 상담 종료 후 학업중단 의지 지속 시 외부 상담기관으로 연계
- 학교 판단에 따라 외부 상담기관(Wee센터, 상담센터)으로 우선 연계 가능

(3) 프로그램 선정

- 숙려제 참여 학생 개개인의 욕구, 학업중단 위기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필수 프로그램 선정

분야별 프로그램 예시

- ① (상담·치유) 개인상담, 부모상담, 또래상담, 심리검사, 미술심리치료 등
- ② (학습지도) 1:1 학습지도, 학습 멘토링 등
- ③ (진로개발) 진로상담, 직업체험(제빵, 요리, 미용, 바리스타) 등
- ④ (문화체험·예체능활동) 자연체험, 스포츠 활동, 공예, 사제동행 캠프 등

(4)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숙려제 운영을 위한 교내 협업체계 구축
-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구성 : 교감, 교무부장,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5) 학생관리

- 학교의 장은 숙려기간 동안 참여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관리 철저

숙려기간 동안 참여 학생 관리

- ① (숙려제 운영 전) 학교에서 학생/보호자 연락처, 숙려제 운영기관 연락처, 숙려

제 프로그램 담당자 연락처를 사전에 숙지

- ② (숙려기간) 학교에서 학생 소재 및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학생 보호자,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를 통해 학생 소재 파악 등 관리

(6) 출석인정

- 학업중단 숙려기간은 학생별로 1회에 한하여 출석 인정

숙려기간 동안 출석 인정

숙려기간 동안 출석 인정은 과도한 혜택이 될 수 있고,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출석 인정은 학교 재학 중 학생별 1회에 한하여 인정함. 단, 특수한 사정이 있어 학교장이 인정한 때는 1회 이상도 가능함

(7) 성적처리 : 정기고사 기간을 피하여 숙려제 기간을 지정하여 실시함

- 위탁형 대안교육에 준하여, 시·도교육청의 관련 교육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성적 처리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8호(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8) 수업료 반환

- 학업중단 숙려 이후에도 학업중단 의사로 자퇴원을 제출한 때를 법령상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간주하여 수업료 반환 등 처리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등)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제4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다. 숙려제 마무리 단계

(1) 숙려기간 종료 후 학업복귀 시 학교적응 지원, 학업중단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으로의 중단학생 연계

- 숙려기간 종료 후 학업에 복귀하는 경우, 주기적인 상담 실시 등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관리 지속

(2) 학업중단 시 기관 연계 의무화

- 학업중단 학생의 최소한의 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 면담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안내하고 학생의 정보 제공 동의서를 숙려 기간 중에 확보

- 동의서 확보의 목적이 연계 지원을 위한 것임을 적극 설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원센터와의 연계)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3) 결과 보고 : 나이스- 장학- 학업중단 위기학생관리

- 숙려제 운영 후 숙려제 대상 학생 등록 :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 여부, 참여 후 학업지속 여부, 내용별 참여자 수 등

- 숙려 기간 종료 후, 학업중단을 하였을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입력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나이스에 학업중단학생등록 불가

3. 기대효과

가. 청소년기 학업중단 이후의 삶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중단 사례 방지

나.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적극 개입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적응력 증진 도모

다. 학업중단 학생의 복교 및 심리정서 지원과 진로탐색 도모로 행복한 학교생활 영위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 신청서

성 명					
숙려기간					
소 속			학년반		
담당교사	성명		담 임	성명	
	직통 번호			직통 번호	
	휴대폰			휴대폰	
<p>담임소견 (환경적 요인 : 가정환경, 친구관계 등, 개인내적 요인 : 학생의 성격, 품행 등 특이사항 작성)</p>					
<p>위와 같이 상담을 신청/의뢰합니다.</p> <p>2020. . .</p> <p style="text-align: right;">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장</p> <p>(기관명) 귀하</p>					